

●국방부고시 제2026-17호
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, 2항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,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5월 27일

국방부장관

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

1. 사업의 명칭 : 해병 00부대 00사격장 완충지역 매입사업
 2. 사업의 개요 :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
 3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98 등 640필지, 930,186㎡
 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계획 승인일 ~ 2031년 12월 31일
 5.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
 - 가. 명 칭 : 국방시설본부장
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-99(용산동 2가 2-15)
 - 다. 연 락 처 : 02-748-4257
 6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(細目) : 변동사항 없음
- ※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예정지역 내 물건조서 변동 내용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
- ※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(☎ 02-748-4257)에게, 국방·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(☎ 02-748-564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